

합성수지 재질 1회용 도시락 용기 사용 허용

합성수지재질 제품에 대한 유사 규제도 풀려야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도시락 용기'의 사용이 허용된다. 환경부는 지난 5월7일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도시락 용기' 사용금지 규제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규정상 사용이 제한됐으나 실제로는 대체재 확보 어려움으로 빈번하게 사용됐던 발포스티렌 등 합성수지 도시락을 앞으로는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도시락 사용 금지 규정은 2003년 7월1일부터 실시되었다. 규제가 실시되기 전에 기업의 상당한 반발과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가 있었다. 그 당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2002.12.12)에서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을 분해성 재질로 대체하도록 규정한 자원 절약법상의 조항을 삭제하고, 합성수지용기 사용을 법으로 규제하는 대신 자발적으로 줄이는 방법의 유인책을 사용하도록 환경부에 권고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환경부는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용기는 난분해성이며 이들의 수거·처리에 사회적 경제적 비용부담이 발생되고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또한 환경부는 상당수의 대규모 점포 내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에서는 합성수지용기 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거부감을 감안해 이미 종이용기로 대체했다는 예까지 들어가며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금지 규정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 협회를 중심으로 한 발포폴리스티렌생산업체와 도시락업체 등 산업계는 보존성이 뛰어난 발포스티렌을 대체할 만한 용기를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특히 음식물을 보관하는 데 필요한 안전성과 보존성을 확보는 데 있어 발포스티렌을 대체할 만한 재질을 찾기가 어려운 만큼 사용 금지 규정이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하고 꾸준히 규제 철폐를 주장 건의해 왔다.

그동안 환경부는 환경단체와 합성수지 용기 제조업체, 협회 최주섭 부회장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

및 현지조사를 갖고 현행 사용금지 규정이 과도한 규제임을 인정하고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해당 사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와 협의 거친 뒤 6월 말께 공포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통 대체재로 종이를 많이 사용하는 데 음식물 용기의 특성상 여기에 비닐 코팅을 하다 보니 또다른 환경 오염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합성수지 용기의 사용 규제보다는 재활용 유도가 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합성수지 1회용 도시락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 재활용을 유도할 방침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에 1회용 도시락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새 정부가 국민의 편익과 산업의 합리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펼치는 이러한 과도한 규제에 대한 완화 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협회는 같은 맥락에서 기존의 인형, 완구, 종합제품 포장재 발포폴리스티렌 재질 사용 금지, 소형 가전 제품 완충재의 발포폴리스티렌 재질 사용 억제 등의 스티로폼에 대한 규제 정책도 하루 속히 시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